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2/
----------	------

제출년월일 : 2008년 3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한방건강산업, 지역개발산업, 관광휴양산업, 교육연수시설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 적극적으로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또한 투자하는 전략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 추가 (안 제2조)
 -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함
- 지원대상 범위 (안 제35조)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전략 산업 대상사업을 별표 3과 같이 정함
- 투자보조금 지원 (안 제36조)
 - 시장은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
 -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
 - 한방건강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

- 1일 상시고용규모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
- 기반시설 지원 (안 제37조)
 -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지원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 불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내·외 기업”을 “국내·외 기업 및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4.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국내·외 기업”을 “국내·외 기업 및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국내·외 투자기업”을 “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을 “한방경제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내·외 투자기업”을 “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내·외 투자기업”을 “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투자유치담당관”을 “한방경제과장”으로 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35조부터 제38조를 각각 제38조부터 제41조로 하며, 제7장(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제35조(지원대상)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대상사업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원대상 투자사업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

제36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표 3의 전략산업 중 한방건강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략산업 중 1일 상시고용규모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기반시설지원) 시장은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이 된 투자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 제2항 중 “투자기업으로”를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자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35조 관련)

구 분	적 용 사 업	비고
한방건강산업	<p>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강증진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화된 한방건강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단, 불법의료사업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생태치료, 보완대체의학 관련 기공, 아로마세라피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증진시설 	
지역개발산업	<p>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관광휴양산업	<p>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의 규정에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관광단지등 	
교육연수시설 산업	<p>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기타 기업체, 교육기관, 단체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대학교, 대학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투자하려는 <u>국내·외 기업</u> 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u>국내·외 기업</u> <u>및 전략산업</u> ————— ————— —————.
제2조(정의)(생략)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4.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성장동 력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u>국내·외 기업</u> 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u>국내·외 기업</u> <u>및 전략산업</u> ————— ————— —————.
제5조(기능) (생략) 1. (생략) 2. <u>국내·외 투자기업</u>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u> ————— —————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 등) ① ~ ② (생략)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 간사는 <u>투자유치담당관</u> 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 ① ~ ② (생략) ③————— ————— <u>한방경제과장</u>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 시장은 <u>국·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u> ② ~ ④ (생략)</p>	<p>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 <u>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u>-----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기금의 용도) (생략) 1. <u>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u> 2. 4. (생략)</p>	<p>제1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u>국내·외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u>----- ----- 2. 4. (현행과 같음)</p>
<p>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생략) ② <u>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담당관이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자로 한다.</u></p>	<p>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한방경제과장</u> ----- -----.</p>
<p><신설> <신설></p>	<p>제7장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제35조(지원대상) ① <u>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대상사업은 별표 3과 같다.</u> ② <u>지원대상 투자사업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7장 보 칙</u> <u>제3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u>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u>제37조(기반시설지원) 시장은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이 된 투자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u> <u>제8장 보 칙</u> <u>제38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u> ① (현행과 같음) ② -----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자로 ----- -----.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u> ① ~ ② (생략)	<u>제39(지원 등의 취소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u>제37조(투자유치 성공 보상)</u> ① ~ ② (생략)	<u>제40(투자유치 성공 보상)</u> ① ~ ② (현행과 같음)
<u>제38조(시행규칙) (생략)</u>	<u>제41(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7장 보 칙</u> <u>제3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u>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생략) <u>제37조(투자유치 성공 보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생략) <u>제38조(시행규칙) (생략)</u>	<p>제37조(기반시설지원) 시장은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이 된 투자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p> <u>제8장 보 칙</u> <u>제38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투자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자로 -----. ③ ~ ④ (현행과 같음) <u>제39(지원 등의 취소 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현행과 같음) <u>제40(투자유치 성공 보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현행과 같음) <u>제41(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08.2.29][법률 제8852호]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자.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0.1.1] [법률 제934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30>

1. "국가균형발전"이라 함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체계"라 함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체·비영리 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4.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 마.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6. "농산어촌"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촌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1조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2. 지역금융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물류업 및 유통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투자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9>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받은 법인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6.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45호]

제4조 (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현황조사·주무장관과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1. 다음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4.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자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2007년 4월 2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부칙 제3조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을 지정하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현황조사·주무장관과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타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도 기타공공기관 지정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주)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텍,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민족문화추진회,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등과학원, 공공기술연구회, 광주과학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핵융합연구센터,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서울예술단, (재)정동극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주)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초 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코레일개발, (주)코레일애드컴,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KTX관광레저(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8관광개발(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녹색자금관리단,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007년 4월 11일
기획예산처 장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 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 다. 제5조·제14조·제26조의4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2.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3. "민간개발자"라 함은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을 말한다.
4.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27조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개발사업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한 지구개발사업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특정지역개발계획에 의한 특정지역개발사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관 광 진 흥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타 자치단체 참고조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1조(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시 관내의 지역에 소재한 우량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규모 및 시기는 고용인원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의2(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함이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우량기업의 지원 기준과 같으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 조의 2 (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0조(국내기업 지원) ① 시장은 여수시 지역 안에서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업종은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 한다.

제34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지역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12조 관련)

산업명	적용 산업 내용(예시)	비고
제조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5 ~ 37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발전소 산업	○ 화력,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 으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체	
연구 및 개발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번호 73101 ~ 73209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체	
관광휴양산업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 제3조의 다음 각호에 의한 관광사업 - 2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3호 관광객이용시설업, 4호 국제회의업, 6호 유원시설업 등 ○ 농어촌 경비법 제2조 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100억원이상 규모의 관광휴양사업	
교육훈련시설산업	○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 및 위탁 교육 생의 직업훈련 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산업체	
골프장시설산업	○ 골프장(규모 18홀이상 시설)	
노인복지시설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번호(86110) 노인휴양시설(실버타운 등)	

제천시 공고 제 2009 - 177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17.

제 천 시 장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한방건강산업, 지역개발산업, 관광휴양산업, 교육연수시설산업 등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략산업에 대한 정의 추가 (안 제2조)
-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7장 제35조부터 제37조 까지)
 - 지원대상 범위 (안 제35조)
 - 지원규모 (안 제36조)
 - 기반시설지원 (안 제37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9일 까지 제천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641 - 5533, FAX 641 - 5499 담당자 : 윤용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 사보	법무감사팀장	전략기획실장			
윤용태	강구	전결 03/10 김석윤			
지방행정주사		심남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9-177호
3. 공고기간 : 2009. 02. 17 ~ 3. 9(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 불임
6. 공고결과
 - 조회 수 : 139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 임 : 입법예고 공고안 1부. 끝.